

前文

경영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구성원 행복이다. 경영활동의 주체인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 과 함께 ‘이해관계자 행복’ 을 키워 나감으로써 지속적 행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토전이자 기반인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간다. 이해관계자 행복을 위해 창출하는 모든 가치가 곧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키워나가며,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신뢰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한 선순환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나간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보호, 고용창출,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모든 구성원은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당 회사는 SKC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라 칭하며, 한글로는 에스케이씨 주식회사로 표기하고 영문으로는 SKC Co., Ltd.라 표기한다.

제 1 조의 2 (지배구조현장)

회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회사의 의

지와 실천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헌장을 마련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폴리에스텔 필름 및 그 가공제품과 합성수지의 제조, 판매
2. 폴리에스텔 필름과 합성수지의 원료, 관련화학제품 및 부산물인 메타놀(독극물)의 제조, 가공, 판매
3.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그 가공제품과 관련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4. 공장 자동화에 관련된 설비 및 기술 용역의 제조, 가공, 판매
5. 전산 용역업 및 연구개발 용역업
6. 점착가공제품 및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7. 플라스틱 이외의 소재 제조, 가공, 판매
8. 사진용 화학물, 사진용 재료 및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9. 전자, 전기부품 및 소재의 제조, 가공, 판매
10. 벤처사업 및 이에 대한 투자, 기술 및 경영지도
11. 화학제품과 정밀화학제품, 기타 부산물이나 원료의 수입, 제조, 저장, 수송, 판매, 수출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업무의 수행
12. 전항을 수행하는데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시설의 건설, 소유, 운영, 임대와 처분
13. 생명과학 및 화장품 원료,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
14.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방지와 소음, 진동, 기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통한 환경보전사업의 영위
15. 태양전지 및 기타 관련 사업
16. 도소매업
17. 부동산 임대업
18.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관련 사업
19.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등 에너지의 생산, 수송, 공급 및 관련 기술사업
20. 기계설비공사업
21. 전기공사업
22.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판매, 수출입업
23. 조명기구 및 전구 제조, 판매, 수출입업
24. 에너지절감 컨설팅 및 서비스업
25. 이차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
26. 전기자동차 소재, 부품의 제조 및 판매
27. 반도체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의 제조 및 판매
28. 생분해성 소재의 제조 및 판매
29. 에너지 절감 소재 또는 부품의 제조 및 판매
30. 상기 상거래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과 지점 및 사업장)

1.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수원시에 둔다.
2. 회사의 지점 및 사업장의 설치, 이전,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kc.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 및 주권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팔천팔백만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단,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7 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 8 조 (무의결권 배당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1종)은 무의결권 배당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9% 이상을 배당하며, 구체적인 배당률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유무상증자시에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주식을 배정한다. 단,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만 증자시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을 배정한다.
6. 우선주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결

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7.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8 조의 2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2종)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 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 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라.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 ①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 ② 특정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 ③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 ④ 보통주식의 주가가 전환주식의 주가를 1월 이상 상회하는 경우
3. 전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9%이상을 배당하며, 구체적인 배당률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전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5. 전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유무상증자 시에 전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주식을 배정한다. 단,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만 증자 시는 전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을 배정한다.
7. 전환주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8.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9.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의 3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3종)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하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9%이상을 배당하며, 구체적인

배당률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유무상증자 시에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주식을 배정한다. 단,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만 증자 시는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을 배정한다.
6.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7.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8.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고,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9.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의 4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4종)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가.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연 복리 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해야 한다.
 - 나.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①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②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다.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춤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라.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
 - 마.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춤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바.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3. 회사는 상환에 관한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4. 상환주식에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9%이상을 배당하며, 구체적인 배당률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상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6. 상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7. 유무상증자 시에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주식을 배정한다. 단,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만 증자 시는 상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을 배정한다.
8. 상환주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8 조의 5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1.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5종)은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고 제8조의2 및 제8조의4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종류주식(이하 “전환상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기타 전환상환주식의 상환 및 전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제8조의2 및 제8조의4에 의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 8 조의 6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전환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1.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6종)은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고 제8조의3 및 제8조의4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종류주식(이하 “(존속기한부)전환상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기타 (존속기한부)전환상환 주식의 상환 및 전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의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 9 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소유한 주식수의 비율에 의해 신주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 이사회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다. 관련법령에 의거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라.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마.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①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②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기술도입을 하기 위해 그 제후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사.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제 9 조의 2 (신주의 배당 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과 회사의 경영이나 해외영업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할 수 있다.
단,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제 8 조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7 년이 되는 시점 내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정한 날까지 행사할 수 있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직하여야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5. 다음의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가.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나. 기타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서 정하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 (주금의 납입)

주금의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인수인은 그 권리를 상실하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납입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배상을 미납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3.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4.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제 12 조 (삭제)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삭제)

1.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삭제)

제 15 조 (삭제)

제 16 조 (삭제)

제 3 장 사 채

제 17 조 (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7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가.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나.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다.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후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라.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마.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바.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항의 전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부여할 수 있다.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이천억원을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 1 일전까지의 기간 중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 기산일에 관하여서는 제 9 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나.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다.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유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라.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마.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바.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이천억원을 보통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1 일전까지로 하되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 기산일에 관하여서는 제 9 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 18 조의 3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9 조 (총회의 소집)

1.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집한다.
2. 주주총회 소집통보는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러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총회소집의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헤럴드경제에 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3. 주주총회의 소집지는 본점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내로 한다.

제 20 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결정한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으며 대표이사가 유고한 때에는 전조 제 2 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2 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1 주에 대하여 1 개로 한다.

제 23 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주주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한다.
2.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1.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2. 총회의 결의에 관해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25 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서는 그 경과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감사위원회

제 26 조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

1. 회사는 3 인 이상 9 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단, 사외이사의 수와 비율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 27 조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1. 이사의 선임은 관련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3. 본 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관련된 특정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회사는 이사선임시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2. 보결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9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1.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인 이상을 선임한다.
2.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를 선임할 수 있다.

제 30 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각각 회사를 대표한다.
2. 대표이사는 일체의 업무를 총괄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2 인 이상일 때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해 업무를 분장한다.
3. 각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2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 31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2 조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33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 34 조 (이사회 의장)

1.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의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의장을 선임한다.

제 35 조 (이사회의 소집)

1. 대표이사는 회일 1 주간 전까지 회의일자, 장소, 목적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써 통보하는 것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6 조 (이사회의 결의 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관련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 36 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 가. 감사위원회
 - 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
 - 다. 기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7 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

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본점에 비치한다.

제 38 조 (보수)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39 조 (업무집행임원)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업무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임원 선임 시에 제29조 제2항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고, 처우 및 임기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 40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1 년간으로 한다.

제 41 조 (재무제표의 작성 및 비치 등)

1.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의 제 계정을 결산한 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나. 손익계산서
 - 다. 기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의 1 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비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손익계산과 처분)

회사의 손익계산은 매 사업연도의 총 수익에 총 손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순이익금으로 하고, 이에 전년도 이월금을 합하여 다음 방법에 따라 처분한다.

- 가. 상법상의 이익준비금
- 나. 기타 법정적립금
- 다. 배당금

- 라. 임의적립금
- 마. 임원상여금
- 바. 기타 이익잉여금처분액
- 사.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43 조 (주식배당금)

1. 이익의 배당은 매 결산기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2. 주주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를 회사에 귀속한다.
3. 미지급배당금은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4. 이익배당금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금 총액의 2 분의 1 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이익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 43 조의 2 (중간배당)

1. 회사는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 또는 현물로 한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 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함한다)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4. 제43조 제2항, 제3항은 중간배당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7 장 기 타

제 44 조 (규정 등의 제정)

회사의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44 조의 2 (안전보건계획)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 45 조 (정관의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상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제 46 조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는 설립시에 일반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47 조 (발기인)

본 회사의 설립발기인의 주소, 성명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9 의 54

최 종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1 가 33 의 20

최 무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 가 1 의 145

최 종 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0 의 11

신 광 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동 7 의 1

한 상 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6 의 28

전 민 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동 87 의 4

노 성 우

부 칙

제 1 조 (제정일)

본 정관은 1973 년 7월 16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 2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제38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단, 제44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

제17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전환사채 발행한도,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는 본 정관의 2013년 3월 22일 개정 시 새로이 기산한다.